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13
----------	-------

발의연월일 : 2026. 3. 4.

발 의 자 : 이연희 · 김남희 · 박상혁
박정현 · 이춘석 · 이광희
문진석 · 서미화 · 전용기
임미애 · 복기왕 · 박홍배
염태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국·중계기 등 이동통신설비는 옥상 임대차가 가능한 민간 건축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이들 건축물은 사전에 이동통신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건축된 건물인 아님에 따라 공간협소나 방수 등의 문제로 인해 설치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이동통신은 구조 요청 및 상황 전파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게 설치된 통신 설비가 파손되거나 탈락할 경우 통신 두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큼.

한편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의 활용에 제한이 있어 이동통신설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나, 임차료 대

신 다른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설치공간 등을 제공하는 방식은 가능한 상황임.

이에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및 고정에 필요한 공간과 거치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신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이동통신서비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설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한정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제1호에 따른 설비를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설비 설치공간 확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

권자와 협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이동통신서비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u> 1. <u>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설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한정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u> 2. <u>제1호에 따른 설비를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할 것</u>